

광주지방법원 2023. 7. 7 선고 2022가단52399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C

피 고 D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병덕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재천

변 론 종 결 2023. 5. 26.

판 결 선 고 2023. 7. 7.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E 사이에 2020. 12. 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E에게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1) 2020. 12. 14. 접수 제19264호로 마친
공유자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자동차 할부 금융업 및 개인 신용대출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E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의 E에 대한 채권 등

○ E은 2019. 5. 15. 원고와 사이에 16,000,000원을 약정이율 연 18.9%, 대출기간 4년, 상환방법 ‘매월 477,550원의 분할상환금 지급’으로 정하여 대출받기로 하는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 E은 2019. 5. 15.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네시스 승용차 1대((차량번호 1 생략), 변경전 (차량번호 2 생략),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가액”을 11,2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9. 5. 16. 원고 앞으로 위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저당권 설정등록을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저당권’이라 한다).

다. E의 이 사건 부동산 처분

E은 자신의 형인 피고에게 2020. 12. 1.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2020. 12. 14. 위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관련 법리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는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그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참조).

한편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의 범위는 사해행위 당시 담보부동산의 가액과 채권최고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채권원리금 및 그중 원금 부분에 대하여 그 후 사실심 변론종결시점까지 발생한 지연이자 상당의 금원이 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1616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갑 제6, 9, 10,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2022. 10. 17.자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은 2020. 11. 19. 당시 11,447,719원(= 대출원금 11,348,098원 + 대출이자 99,621원)이었고,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20. 12. 1. 당시에는 대출이자의 발생으로 인하여 11,447,719원을 상회하였던 사실, 이 사건 자동차 등록원부에 이 사건 저당권의 “채권가액”2) 이 11,200,000원으로 등록되어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이 사건 대출원리금 액수가 이 사건 저당권의 “채권가액”(11,200,000원)을 상회하고 있었으므로, 당시 이 사건 자동차의 시가가 얼마이었는지와 관계없이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우선변제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아니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3) 따라서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 중 적어도 11,2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이 법원의 2022. 10. 17.자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2020. 12. 1.) 적극재산의 가액이 약 11,271,990원이었고, 소극재산의 가액은 약 70,965,411원으로서 채무초과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총 재산이 감소하여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이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E은 당시 이러한 점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

1)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이 법원의 2022. 10. 17.자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20. 12. 1. 당시 E의 적극재산은 약 11,271,990원에 불과한 반면,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무 11,447,719원, (주)F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 20,024,590원, (주)G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 18,146,803원, H(주)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 8,925,811원, I(주)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 5,863,209원 등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향후 진행될 수 있는 배당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들이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해 보이므로 원고로서는 피보전채권액을 넘어서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원상회복 방법

채무초과 상태인 E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공유자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제승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전라남도 영광군
 대지 671㎡
 -공유자 지분 15분의 11중 15분의 2 지분 전부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갑구 16번 2020년 12월14일 접수번호 제19264
 호 공유자 지분 15분의 9중 15분의 2)
2. 전라남도 영광군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영광군
 위 지상
 시멘트 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69.12㎡
 시멘트 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변소
 5.67㎡
 시멘트 블록조 대골 스테이트지붕 단층창고
 53.01㎡
 -공유자 지분 15분의 11중 15분의 2 지분 전부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갑구 13번 2020년 12월14일 접수번호 제19264
 호 공유자 지분 15분의 9중 15분의 2)

끝.

1) 소장의 청구취지에 기재된 “광주지방법원 광주등기국”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의 오키임이 명백하다.

2)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에 따르면,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하려는 자는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에 채권액 등을 적어야 한다(제2조 제2항 제1호). 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등기된 범위에서만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3) 만약 2020. 12. 1. 당시 이 사건 자동차의 시가가 11,200,000원을 상회하였다면,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 중 11,2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시가가 당시 11,200,000원 이하이었다면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 중 위 자동차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피보전채권이 인정될 것이다.